

전시산업발전법의 법적 보완과제에 관한 고찰

심 종 석* · 노 정 희**

목 차

I. 서론

III. 전시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

II. 전시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IV. 요약 및 결론

(논문투고일 : 2009.6.19. / 논문심사일 : 2009.7.3. / 게재확정일 : 2009.7.15.)

I. 서론

1. 문제의 제기

법률상 전시산업이라고 함은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산업' 등을 총칭한다. 이 경우 전시회란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전본상품박람회·무역상담회·박람회 등'을 말한다.¹⁾

2008년 03월 21일 법률 제8935호로 공포되어 동 년 09월 22일부 시행되고 있는 전시산업발전법(이하 '전시법'이라 한다)은 전시산업의 경쟁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전임강사, 경영학박사·법학박사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관광경영학과 전임강사, 경영학박사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을 도모하여 무역진흥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전시법, 제1조). 입법취지에 의하면 전시법은 무역입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유관산업의 경기부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첨예한 이해가 집중되고 있는 전시산업은 주지하듯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품·기술·정보가 결합된 통합 마케팅 수단으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전시산업은 무역수지 개선에 견인차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은 물론, 유관산업 기축 인프라로서 그 의의를 돋보이고 있다.

순기능적 시각에서, 무역전시회를 통해 정보수집, 바이어 발굴 등을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함은, 국내 유관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해외시장개척·수출증진·교역증대의 순차적 파급효과를 담보하여 궁극적으로 동종 산업분야는 물론 유관산업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곧 경제적 실익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의 전시회는 국가경제발전의 성장동력으로서 그 지위를 표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유관산업 부양을 위한 기축 인프라로서 잠재력이 지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이 같은 취지에서 정부는 최근 전시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단편으로서 전시산업의 법적 기반 확립을 위해 시행·운영 중에 있는 전시법 및 이에 후보된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은 당해 지원체계의 실체로 간주된다.

그러나 본래 전시산업은 그 특성상 규모의 경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제반 여건은 실로 열악한 환경 하에 놓여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테면 지방의 개별 중·소형 전시장의 난립으로 인하여 과당경쟁 및 유사·중복전시회 개최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지역기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전시산업 구성요소간 연계성 부족, 전시 전문인력 양성 부족, 전시산업의 국제화 및 정보화 부족, 전시회 기획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영세성, 전시참가업체의 효율적 전시회 활용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서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그렇다면 이상과 같이 적시된 문제점에 대하여, 현재까지 정부의 법적·제도적 지원체계가 제 아무리 시행 초기에 있다손 치더라도, 전시법 및 정부의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이 당초 의도된 취지에 걸맞게 그 법적·제도적 기반 인프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나아가 이상의 문제점을 기존의 법적 지원체제로 포섭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지 여부가 관건으로 주목된다.

본고는 이 같은 전시산업의 법적 기반 인프라에 주안점을 두고, 곧 우리나라 전시법이 유관산업의 경기부양에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에 입법적 흠결 내지 불비사항은 없는지, 설령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나아가 당해 문제점을 어떻게 다루고 또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앞서 적시한 제반 문제점은 한편으로 전시산업 그 자체에 내재된, 곧 기능적 차원에서 비롯된 고유한 문제점일 수도 있으나, 본 고에서는 전시법이 적용됨에 있어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 흠결 내지 입법 불비에 기한 문제점에 국한하고자 한다.

살피기에 전시법은 전시산업의 발전계획·관리·기반조성·지원·별책 등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방안 내지 전략 등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별도의 차별화된 지원성과를 개진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학계간 연구에 있어서도 대부분 선행연구가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분석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는 추이에 있어, 결과적으로 전시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정책적인 법적 대안은 그다지 집적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전시법이 함의하고 있는 법적 지원체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차 되짚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전시법이 수용하고 있는 법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사안별 당해 분야별 실재에 적의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명료히 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었다. 다만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현재까

지 법적·상무적 연구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로부터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내지 시의성을 적의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나름의 기대를 앞세워, 이후 후속연구에의 연구동기와 유관분야에서의 연구성과를 본 고의 연구결과를 통해 재삼 촉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고는 우선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련되어진 전시법의 시행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또는 예견가능한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대안 내지 주목해 할 사안 등에 주안점을 두고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시법의 법적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현재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현실적 대안을 추론하여 이를 제시하고자 함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요컨대 본 고가 전시법의 법적 흠결 내지 불비에 기한 문제점에 국한하여 그 대안제시에 논점을 두고 있는 취지는 전시법의 시행상 적정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3.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전시산업은 전시장 면적, 전시회 개최전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급속한 신장세를 보여 왔는데, 지표상 2008년 기준 전시회로 인한 직접 및 간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생산유발 6,407억원, 부가가치 유발 3,165억원 및 고용유발 7,796명 등 국내총생산의 약 0.15%에 해당하는 약 1조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외형적인 급신장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 및 숙박·교통 등 부대시설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 유관산업의 공조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 있고, 그 산업구조 또한 영세사업자의 난립 및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무역규모 및 경제적 수준에 필적할 수 있는 기대치를 나타내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국내 전시회에 우선하여 해외 유명 전시회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³⁾

2) 상세는 산자부, 「전시산업심사보고서」, 2008.

〈표 1〉 국내 전시장 현황(2008)⁴⁾

전시장	개장일	면적(m ²)	전시회	전시장	개장일	면적(m ²)	전시회
COEX	88. 09	36,027	176회	aT	02. 11	8,047	18회
SETEC	99. 05	7,948	39회	KINTEX	05. 04	53,541	38회
KOTREX	95. 06	4,200	12회	KDJ	05. 09	10,200	7회
EXCO	01. 04	11,616	26회	CECO	05. 09	9,259	9회
BEXCO	01. 09	33,183	50회	계		174,021	375회

〈표 2〉 주요국의 정책적 전시산업 지원⁵⁾

주요국별	지 원 내 용
독일	- 전시회 참가업체에 한하여 부가세 감면 등 세제혜택 - FKM을 통한 전시회 관련 통계의 신빙성 확보 및 인증 - 전시장 세제지원(부동산세·법인세·영업세 면제 등)
미국	- 유망전시회 선정, 상무부를 통해 전시회 홍보 및 유치 활동 - 주요 국내 전시회에 참가하는 자국 기업 수출업무 지원 - 전시장 세제지원(재산세·법인세 면제·제반 부담금 면제 등)
중국	- CCPIT를 통한 전시회의 심사 및 승인 - 정부 및 일반투자자를 통한 자금조달과 전시장 건립 지원
일본	- 전시산업 관련부서 신설 - 전시장 세제지원(지방세·법인세 면제·제반 부담금 면제 등)
홍콩	- 국가수입의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전환하여 지원 - 정부가 전시장 건립을 직접 지원
싱가폴	- 자체 인증제도 실시 및 인증전시회에 대한 세제혜택 - 정부가 전시장 건립을 직접 지원

- 3)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기능적 문제점에 관해서는 김호철,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Machinery Industry』, 2004, 07. 34-35면.
- 4) 유화숙 외, “한국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독일과 한국의 전시산업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09, 86-87면 재구성.
- 5) 주요국의 전시산업 입법정책안에 관한 상세는 성은희·전창석, “한국전시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149-155면.

주요국별 계량적 수치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출 경우, 중국은 상해를 중심으로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도 GDP의 1%에 해당하는 410억마르크(약 24조원)의 생산 유발 및 약 23만 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⁶⁾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전시회의 경제적 효과가 2008년 기준 GDP의 0.17%(1조 4천억원), 고용창출 1만 6,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제규모(2만㎡) 이상의 전시회는 독일이 전체 전시회 중 25.6%, 홍콩은 13.6%, 중국은 6.4%이나 우리의 경우 2.7%에 불과하다는 것. 전국적으로 9개인 전시장의 총 면적도 174,021㎡로, 미국이나 독일의 1/25, 중국의 1/10, 일본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⁷⁾

한편 세계의 전시산업은 대형화·국제화·전문화의 시대적 조류를 지향하고 있는데,⁸⁾ 일례로 전시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지속적인 전시시설의 확장과 더불어 2005년 기준 세계 100대 전시회중 70% 이상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⁹⁾ 여타 이태리의 밀라노, 미국의 올랜도와 시카고, 그리고 신생후발국 폴란드와 체코, 중국 및 EU 일부국가들 역시 이 같은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고 있는 상황이다.¹⁰⁾

6) 독일의 무역전시 산업정책에 관한 상세는 김봉석, 「독일의 무역전시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5.

7) 주요 전시선진국의 전시산업의 현황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상세는 윤기관·장채, 「중국무역전시산업 국제화수준 제고 방안」,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8. 30-38면. 세계 전시산업의 현황과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실물지표에 대한 상세는 강성주,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개선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100-105면.

8) 다만 전시산업의 대형화에 기하여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적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국제기구로서 박람회국제사무국(B.I.E : Bureau Interantional des Expositions)과 전시산업의 국제화·전문화를 계도하기 위하여 상업적 기구로서 국제전시회연맹(UFI : Union des foires Internationales)을 창설해 두고 있다. 조원길, 「WTO/DDA 환경하에서 국내 무역전시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242-243면.

9) 독일, 우리나라 전시산업에 관한 실물경기지표 분석 유희숙 외, 전제논문, 86-89면.

10) 상세는 AUMA, *Die Messwirtschaft Bericht*, 2006, pp.36-38.

II. 전시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

1. 전시산업발전법의 입법취지

주지하듯 전시산업은 신기술과 신제품의 비교 및 관련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기업에게 효과적인 해외마케팅 수단을 제공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공헌하며, 전·후방 산업연관효과를 통해 소득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점한다.

특히 전시회는 WTO 하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해외마케팅 수단으로서 그 배타적 지위를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¹¹⁾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들은 전시산업을 주요 수출촉진 수단 및 국가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으로 전시산업 육성에 전 방위의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내전시회의 활성화를 통해 무역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시산업의 도약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전시회와 전시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도화하는 한편, 전시산업의 구조를 선진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시사업자를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볼 때 전시법의 제정 이전,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9011호, 이하 '무역법'이라 한다)에서 무역인프라로서 전시산업을 일부 포함하고는 있었으나,¹²⁾ 전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시산업을 위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였다.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전시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사업 내지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특단의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11) WTO하에서 우리나라 무역전시국고지원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윤기관, "WTO 허용보조금으로서의 무역전시국고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국의 무역전시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 V.

12) 전시법(제8935호),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됨.

마련함으로써 무역을 진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취지를 두고 입법안이 마련되었던 바, 그 결과가 곧 전시법이다.

2. 전시산업발전법의 구성체계

총 7장 제29조로 마련된 전시법의 구성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시산업 발전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시산업발전계획의 수립(제3조), 전시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행기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의 명시(제4조),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제5조), 제3조의 연관규정으로서 전시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산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6조), 전시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시사업자와 전시시설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과 공정한 경쟁구조 정착을 위해 전시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 금지의무의 부여(제7조 내지 제10조, 제11조), 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를 위한 시책과 주관기관의 선정(제13조), 전시회 인증제도의 도입과 사이버 전시회 기반 구축(제14조, 제15조), 전시회의 국제화·대형화·전문화·표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근거(제17조, 제18조, 제21조),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 및 금융·세제·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지원 및 전시사업자 단체 등에 대한 설립근거(제22-25조) 등이다.

3. 전시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평가

첫째, 전시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시산업과 관련한 기본개념, 곧 전시산업·전시회·전시회 부대행사·전시시설·전시사업자·사이버 전시회 등을 정립하고 있다. 이는 현행 무역법에 따른 무역전시회에 국한된 전시회의 범위를 확대해 두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의의를 부각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의 개념정립에 기하여 전시산업의 외연 확대에 따라 기존 무역전시회 이외의 일반전시회 및 상설전시회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시회와 관련된 공사·디자인 등 관

런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전시기법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 관련 부대시설과의 시너지 효과의 제고를 통해 전시회의 마케팅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에서 상당한 실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전시법에서 수용하고 있는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의 등록제도와 이에 상당한 벌칙제도는 현재 전시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수단의 부재로 소규모 영세 전시사업자가 난립함으로써 전시산업의 발전이 저해·위축되고 있으며, 다단계 입찰관행 등 불공정 거래관행의 상존으로 소규모 전시사업자의 영세화가 가속되고 전시산업의 경제효과가 유출되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곧 동 조치의 함의는 등록된 전시사업자에 대해서만 전시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산업의 경제효과가 전시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규모 전시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대형 전시사업자로 육성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 전시산업 및 전시사업자의 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부터 구할 수 있다.

셋째, 전시산업의 적정관리차원에서 전시사업자는 사업상 등록을 필수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사업시행과정이 있어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 운영자로 등록한 자가 불공정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과징금의 부과 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내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넷째, 전시시설의 국제경쟁력, 전시회 및 국제행사의 수급,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이 협의 요청한 전시시설 건립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중·장기 수급전망 및 전략에 입각한 전시시설 건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건설적 입법내용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또는 제도를 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를 위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의 설정 등 유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확보해 두고 있다.

여섯째,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 전시회 및 국

내·외 행사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의 수립,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의 유형 및 기준 고시 등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671호. 이하 ‘조세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법률 제9669호) 및 그 밖의 여타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규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다. 부담금의 감면과 국·공유지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항도 이에 준한다.

Ⅲ. 전시산업발전법의 문제점과 개정사항

1. 전시산업 등의 개념 정립

전시법은 제2조 정의규정에서 전시산업·전시회·전시회 부대행사·전시시설·전시사업자·사이버전시회 등에 대한 개념을 명정하고 있다. 이 경우 전시산업과 전시사업자는 그 개념의 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전시산업의 내용이, 곧 전시사업자로 분류한 전시시설사업자·전시주최사업자·전시장치사업자·전시용역사업자를 포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시산업의 정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사업자를 총 네 개의 부류로 구분하고 있음(전시법, 제2조 제5호)은 전시산업에 대한 업태를 명문으로 획일화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법적 제한 및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곧 전시용역사업자를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전시법, 제2조 제5호 라목)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전시주최사업자의 범위로서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는 사업’(전시법, 제2조 제5호 나목)과의 개념적 분기 내지 차별성이 명료하지 않다고 하는 시각에서이다. 이 같은 시각은 전시사업자의 테두리 내에서

이하 제3장의 전시사업자의 등록제도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안으로 부각되는데, 결국 전시산업의 활성화에 기하여 당해 제한으로부터 상당한 혼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시사업자의 구분에 있어 전시시설사업자와 전시장치사업자는 상호 배타적 연관성을 전지하고 있다고 보아 그나마 무리 없는 정의규정이라 간주할 수 있으나, 달리 전시주최와 전시용역에 대한 구분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전시회 기획업체 및 용역 공급업체의 영세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 전시점을 고려할 때, 당해 역기능적 순환구조를 더욱 부추길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시사업자간 상호 공조·협력체제 구축차원에서나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모름지기 전시산업의 경제적 과급효에 대한 실익을 담보하기 위한 본연의 입법취지를 표창하기 위한 방편에서 본 정의규정은 마땅히 전시용역사업자를 전시주최사업자 또는 가사 전시기획사업자 등으로 일원화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다른 한편 사이버전시회에 대한 정의규정도 전자거래기본법(법률 제9504호)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시회’로 수정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당해 분야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확장해 두어야 함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마땅한 논리의 귀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시법 제15조의 규정내용도 이에 준한다.

2.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의 등록제도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사업자의 등록제도에 관해서는 이미 전시법의 심사보고서에서도 적시된 바와 같이 당해 규정이 전시산업에 대한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전시산업에 대한 신규 유망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전시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것이라 예상된다.¹³⁾ 그 배경은 산업의 자율

13) 전시법, 제7조 및 제8조.

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전시업계에 대한 과잉규제가 수반될 수 있음에 근거한다.

이에 대하여 전시법은 최종입법 시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제를 병합하여, 곧 등록 시 신고 등에 의제할 수 있는 규정(전시법, 제8조)을 존치해 두고는 있으나, 당해 규정은 유독 전시시설사업자에게만 국한하여 명문화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럼에도 등록의 취소에 대한 규정(전시법, 제10조)은 전시사업자로 일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앞선 과잉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하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7조의 규정내용은 최소한의 충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이를 일괄 신고제로 병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신고제에 기한 별단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아울러 신고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등록의 취소요건, 곧 제10조는 그대로 존치해 두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규정내용에 있어서도 불분명한 자구가 명문화되어 있어 그 해석에 따른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도 한데, 이를테면 등록취소에 있어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전시법, 제10조 제1호)의 내용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그리고 '전시산업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전시법, 제10조 제2호)도 마찬가지로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3. 등록의 결격사유

당초 전시법의 입법안에서는 일반 전시사업자 또는 전시시설 운영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존치해 두었으나,¹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법률 제8863호)상 차별취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었다.

14) 전시법, 제9조 제2호.

그 배경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실질적 회생을 위해서는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만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수입인의 재산적 위험이 곧바로 위임인에게 전가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을 유지함이 법리상 마땅하다는 의견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전시사업 전반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거나 또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 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등록의 결격사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시법의 입법과정에 있어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었다. 결국 이 같은 논점에 기하여 당해 규정은 입법안 상정 시 삭제되었다.

그러나 생각건대 본 규정은 앞서 문제점으로 적시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개별 중·소형 전시장의 난립, 과당경쟁 및 유사·중복전시회 개최, 전시산업 구성요소간 연계성 부족 등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시산업은 전시사업자간 신뢰관계에 기초한 협조와 공조체계가 여느 산업에 비하여 보다 긴요한 실정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나아가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교우위의 전시회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는 시각에서 마땅히 존치해 두어야 할 규정이라 판단된다.

한편 등록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제9조의 내용은 총 3호의 결격사유를 예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전시법, 제9조 제3호)으로 그 내용을 명정하고 있다. 본 규정내용을 명료히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구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4. 등록의 취소요건 및 불공정거래의 금지

전시법 제10조 등록의 취소요건에는 전시사업자간 불공정거래에 의한 등록취소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법률 제9554호. 이하 '독점법'이라 한다)에는 사업자의 불

공정 거래행위 유형, 곧 제4장의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7장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등이 망라되어 있고, 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 등 벌칙이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전시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은 현행 독점법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논리가 수용된 결과이다.

그렇지만 설령 개별법에서 서로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기준·벌칙 등을 별도로 정할 경우 당해 집행기준을 새로이 신설함에 따른 법적용상 혼선 및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전시법상 등록의 취소요건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입법상 불비라고 판단된다. 제7장 벌칙규정 또한 이에 준한다.

생각건대 등록의 취소요건에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명시적 규정을 존치해 두지 않고 있음은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사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사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보전할 수도 있다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 나아가 불공정거래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시사업자 등에 대하여 일정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벌칙규정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점법의 벌칙규정과 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응당 주의적 규정으로서 그 상징성에 대한 법적 실익을 표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등록의 취소규정에 불공정거래 금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존치해야 함은 전시사업자간 상호 주의의무와 협력의무를 보다 견고히 할 수 있는 법적 배려 차원에서의 실익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마땅할 것이라 판단된다.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마련

전시법은 전시산업의 표준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제18조), 그 내용은 관계기관은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전시사업자간 계약기준의 설정 등의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동 조에서는 독점법상, 곧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으로

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전시법, 제19조 제1호) 및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전시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부가하고 있다.

당해 규정에서는 독점법의 제한요건을 명시적으로 부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4호에서 등록의 취소요건 및 불공정거래의 금지조항에는 동 조와는 달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확한 입법상 불비로 지적된다.

결국 연관 법률의 해당조항을 전시법의 부칙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동 조에서와 같이 개별규정 내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수정이 긴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전시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

전시법은 또한 전시산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루고 있는데(전시법, 제21조),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국내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해외마케팅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해외마케팅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의 유형 및 기준 등을 고시하고, 관계기관의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조의 의도는 전시산업 및 해외마케팅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기준 및 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에 그 배경을 두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곧 전시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마케팅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동 조의 실질적 파급효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유형·기준·조정내역 등이 전시법의 시행령 또는 세칙에서나마 명료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본래 전시산업 자체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서, 그리고 통합 마케팅 수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가시적 성과를 돋보이기 위해서는 당해 지원 및 유형 등에 대한 특단의 기준제시가 필수불가결할 것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법적 지원에 대한 실효성 담보 차원에서도 그 내용은 마땅히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7. 세제지원 및 기타

당초 전시법의 검토안에서는, 조세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여타 법률에서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¹⁵⁾ 개별법에 세제지원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그 일체를 조세법에 일임해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¹⁶⁾ 이 같은 조세법의 규정에 따라 전시법에서도 세제지원에 관한 제반 내용을 조세법 또는 경우에 따라 지방세법에 일임해 두고 있다.

본 조 등의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별단의 이견이 없으나, 다만 ‘정부는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전시사업자에 대하여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시법, 제23조 제2호)는 규정과 ‘전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전시법, 제24조)는 규정에 대해서는 별단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곧 양 규정의 내용은 관련 법률에 의거, 그 감면의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감면의 폭과 범위를 명료히 정해 두고 있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 전시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에 기한 가시적 성과를 유추할 수 없는, 이를테면 명목상의 규정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인다.

가사 법률의 규정에서 이를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달리 세칙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명료히 제시해 두어야 할 것인 바, 그 이유는 전시산업 및 전시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실질 기준을 제공하는

15) 조세법, 제3조 참조.

16) 전시법, 제23조 및 제24조.

것은 당해 산업을 적극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IV. 요약 및 결론

전시시설을 건립·운영하거나,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를 기획·개최·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물품 및 장치를 제작·설치하거나, 전시공간의 설계·디자인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하거나, 전시회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으로 총칭되는 전시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 내지 통합 마케팅 수단으로서 국내·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제반 여건은 열악한 환경 하에 놓여있음이 주지의 사실인데, 그 배경은 지방의 개별 중·소형 전시장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유사·중복전시회 개최에 따른 폐해, 지역기반 전시산업 구성요소간 연계성 부족, 전문인력 양성의 미비, 국제화 및 정보화 부족, 전시회 기획업체 및 서비스 공급업체의 영세성, 전시참가업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한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여 전시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성장발전을 도모하며 이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는 전시법 및 이에 후보된 전시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당해 산업의 부양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본고는 이상의 전시산업의 법적 기반 인프라에 주안점을 두고, 곧 우리나라 전시법이 유관산업의 경기부양에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입법적 흡결 내지 불비사항 내지 문제점에 대한 법적 보완과제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시산업 등의 개념정립에 관하여 전시주최와 전시용역에 대한 구분은 전시회 기획업체 및 용역 공급업체의 영세성 문제에 직면해 있는 현시점을 고려하여 전시용역사업자를 전시주최사업자 또는 가사 전시기획사업자 등으로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전시회에 대한 정의규정도 관련 입법과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정보처리시스

템을 통한 전시회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시사업자 및 전시시설의 등록제도는 전시산업에 대한 까다로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전시산업에 대한 신규 유망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전시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다고 하는 시각에서 최소한의 충족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이를 일괄 신고제로 병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제에 기한 특단의 문제점과 신고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등록의 취소요건은 그대로 존치해 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등록취소에 있어 제10조 제1호의 내용과 제10조 제2호의 내용은 각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셋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일반 전시사업자 또는 전시시설 운영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요건은 전시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나아가 전시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비교우위의 전시회 지위를 적극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존치해 두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제9조 제3호의 내용은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자구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등록의 취소요건 및 불공정거래의 금지에 관하여 전시법상 등록의 취소요건에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기준·벌칙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입법상 불비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벌칙규정 또한 이에 준한다.

다섯째, 전시산업의 표준화에 대하여 독점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규정으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의 취소요건 및 불공정거래의 금지조항에는 달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은 명확한 입법상의 불비로 지적된다. 연관 법률의 해당조항을 전시법의 부칙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개별규정 내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입법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전시산업에 대한 법적 지원에 기하여 전시법 제21조의 법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원·유형·기준·조정내역 등의 상세가 전시법의 시행령 또는 세칙에서나마 명료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세제지원 및 기타사항으로 전시법 제23조 제2호와 제24조는 감면근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폭과 범위를 명정하지 않고 있어 전시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에 기한 가시적 성과를 유추할 수 없는 명목상의 규정으로 간주된다. 가사 법률의 규정에서 이를 다룰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달리 세칙 등을 통하여 이를 명료히 제시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주, “우리나라 전시산업의 개선방안”,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 김봉석, “독일의 무역전시 산업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30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5.
- 김호철,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Machinery Industry」, 2004, 07.
- 산자부, 「전시산업심사보고서」, 2008.
- 성은희 · 전창석, “한국전시산업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2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4.
- 유화숙 외, “한국전시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독일과 한국의 전시 산업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지」 제11권 제1호, 한국의류산업학회, 2009.
- 윤기관, “WTO 허용보조금으로서의 무역전시국지지원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한국의 무역전시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6.
- 윤기관 · 장채, “중국무역전시산업 국제화수준 제고 방안”, 「무역학회지」 제33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8.
- 조원길, “WTO/DDA 환경하에서 국내 무역전시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7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5.

AUMA, *Die Messewirtschaft Bericht*, 2006.

<http://www.auma.de>

<http://www.tradefair.de>

[Abstract]

A Study on Main Points of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in Korea and the Complementary Issues of Exhibition Policy

Shim, Chong-Seok

Noh, Jeong-Hee

As we known that the exhibition industry becomes a booster of the modern service industry with its characteristics of high efficiency and high economic returns. Especially trade exhibition industry recently emerged as exhibition industry policy that is not this only national strategic promotion but the legally active support. Now we should have focused on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in Korea and the complementary issues of exhibition policy.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in Korea are consist of chapter 7 and 29 articles. In order to the main articles are establishment of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plan(art. 3), designated government agency and its foundation(art. 4), consideration committee for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art. 5), demand investigation of exhibition industry(art. 6), certificate of registration for exhibition facilities and fair trade obligation(art. 7, 10), promotion and management of exhibition industry information and its main policy with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organ(art. 13), infrastructure of cyber exhibition(art. 14, 15), the plan of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specialization, standardization for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art. 17, 18, 19), reduction of finance, tax, expenses(art. 22-25) and so on.

주제어 : 전시산업(exhibition industry), 전시산업정책(exhibition industry policy), 전시산업발전법(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 law), 전시산업 국제화·세계화·전문화·표준화(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specialization, standardization for the exhibition industry development)